

공지: 전체 식권 수혜자 중요 –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알아두어야 할 사항

시행일: 2008년 10월 1일

- 여러분이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여러분의 자녀 또는 부양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이제 여러분의 소득공제에 사용됩니다. 이전에는 (부양가족 1인당) \$175 또는 \$200만 소득공제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이 지출하는 탁아/부양가족 보호 비용이 각 아동이나 부양가족에 대하여 \$175/\$200 이상인 경우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혜택은 늘게 됩니다.
- 교육저축(예, 529s) 및 연금 계좌(예, IRAs) 목적의 모든 “비과세” 저축은 여러분의 재산이 \$2,000(본인이 노인 또는 장애인인 경우 \$3,000) 이상인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.
- EBT 카드를 180일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혜택은 비활성 계정으로 전환됩니다. 365일이 지난 후에는 비활성 계정에 있는 혜택이 소멸됩니다.
- 종이 식권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2009년 6월 17일까지 카운티에 연락하여 EBT 카드로 전환하셔야 합니다. 2009년 6월 18일부터 종이 식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식권 혜택에 있어서의 변동을 동반하는 해당 변경사항 및 여러분의 가구 상황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를 받게 됩니다.

카운티가 새로운 금액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10월 혜택을 잘못 산정했다고 생각하시면, 본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또는 무료전화 1-800-952-5253으로 전화하여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. 청각장애인으로서는 TDD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1-800-952-8349번으로 전화하십시오. 주정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카운티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. 청문회에서 본인이 직접 변호하거나 친구, 변호사, 또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변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본인이 직접 물색해야 합니다. 여러분 지역의 법률상담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